제정 2005년 7월 28일 조례 제 842호 개정 2006년 4월 20일 조례 제 871호 전부개정 2014년 10월 24일 조례 제1371호 전부개정 2016년 2월 5일 조례 제1453호 (제명개정) 일부개정 2018년 4월 16일 조례 제1651호 (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) 일부개정 2018년 5월 11일 조례 제1663호 (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) 일부개정 2020년 12월 11일 조례 제1869호 일부개정 2021년 11월 5일 조례 제1950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에 따라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〈개정 2020. 12. 11〉

- 1. "지역사회보장협의체"(이하 "대표협의체"라 한다)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오 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.
- 2. "실무협의체"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.
- 3. "실무분과"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 간 연계·협력을 강화 및 실무협의체의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.
- 4. "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"(이하 "동 협의체"라 한다)란 동 지역의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.

제3조 삭제〈2020. 12. 11〉

- **제4조(대표협의체 기능 및 구성)**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건의하 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 〈개정 2018. 4. 16, 2020. 12. 11〉
 - 1.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- 2.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

- 3.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
- 4.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
- 5.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6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
- 7. 삭제〈2018. 5. 11〉
- 8. 삭제〈2018. 5. 11〉
- 9. 삭제〈2018. 5. 11〉
- 10. 삭제〈2018. 5. 11〉
- 11.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오산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지역사회 보장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시장, 사회복지·고용·주거담당 국장,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〈개정 2020. 12. 11〉
- ④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. 이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제5조(실무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)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·협의 한다.
 - 1.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
 - 2.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 · 건의
 - 3.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
 - 4.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
 - 5.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
 - 6. 삭제〈2021. 11. 5〉

- 7.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
-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〈개정 2020. 12. 11, 2021. 11. 5〉
-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사회보장·보건의료·고용·주거·교육 업무팀장,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〈개정 2021, 11, 5〉
-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·연구 또는 연계·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.
- **제6조(실무분과)**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, 총무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〈개정 2020. 12. 11〉
 -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, 사회보장·건강의료·고용·주거·교육·보호안전·환경·문화여가 업무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〈개정 2020. 12. 11〉
 - 1.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2. 사회보장·건강의료·고용·주거·교육·보호안전·환경·문화여가를 행하는 기 관·시설·단체의 실무책임자
 - 3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-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총무는 분과장이 임명한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실무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의 협의를 거쳐 실무협의체 의결로 정한다. 〈개정 2020. 12. 11〉
- 제7조(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) ① 시장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법 시행규칙 제7조제 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의체를 둔다. 〈개정 2020. 12. 11〉
 - ② 동 협의체는 동장과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. 〈개정 2020. 12. 11〉
 - ③ 동 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〈개정 2020. 12. 11, 2021. 11. 5〉

- ④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, 부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〈개정 2020. 12. 11〉
- ⑤ 삭제〈2020. 12. 11〉
- **제8조** 삭제〈2020. 12. 11〉
- 제9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각 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각 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0조(위원의 임기)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 -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 〈개정 2021. 11. 5〉
 -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 〈신설 2021, 11, 5〉
- 제11조(위원의 양성평등) 각 협의체 위촉직 위원의 수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제 2항을 따른다.
- 제12조(위원의 해촉) 시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삭제〈2021. 11. 5〉
 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[전문개정 2020, 12, 11]

- 제13조(사무국)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.
 -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상근으로 둘 수 있다.

-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〈개정 2021. 11. 5〉
- 1. 일반 행정관련 업무
- 2.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한 업무
- 3. 사회보장관련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 간의 조정 및 연계활동 업무
- 4.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·운영
- 5.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

[전문개정 2020. 12. 11]

- 제14조(회의 등)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시 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 -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.
 -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이 경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 - ④ 대표협의체는 구체적인 실무사안을 연구·검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에 의안을 회부할 수 있다.
 -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은 안건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.
 -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 -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.
- 제16조(회의록)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·작성하여야 한다.
 - 1.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

- 2.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
- 3. 심의사항
- 4. 심의결과
- 5.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비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제17조(의결사항의 처리)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8조(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등)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(이하 "관계인 등"이라 한다)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[제목개정 2020. 12. 11]

- 제19조(공청회 등의 개최)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.
- 제20조(회의 수당 등)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·전문가·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「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동 협의체 위원의 복지대상자 발굴 및 사업홍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〈개정 2020. 12. 11〉
- 제21조(포상) 시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등 민관협력에 그 공적이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 및 각 협의체 위원·자원봉사자 등에게 「오산시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- 제22조(협의체 운영지원 등)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지역사회보장 민·관 협력 체계구축 및 연계증진사업
 - 2. 협의체 위원의 연수, 교육, 워크숍 등 기회 제공

- 3.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, 시행 및 평가 심의 자문 사업
- 4. 지역 내 복지자원 관리사업
- 5.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「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23조(운영세칙)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〈2016. 2. 5 조례 제1453호 전부개정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오산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이를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「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 및 「오산시 복지위원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각각 이 조례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,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은 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오산시 노인복지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6조제3항 중 "지역사회복지협의체"를 "지역사회보장협의체"로 한다.

제27조 중 "지역사회복지협의체"를 "지역사회보장협의체"로 한다.

- ② 「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 중 "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"를 "지역사회보장협의체"로 한다.
- ③ 「오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 중 "오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"를 "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"로 한다.

부칙 〈2018. 4. 16 조례 제1651호,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0호 중 "「오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5조에 따른

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"을 "「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16조에 따른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"으로 한다.

부칙〈2018. 5. 11 조례 제1663호,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〉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오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」는 폐지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「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삭제한다.

② 부터 ④ 까지 생략

부칙 〈2020. 12. 11 조례 제1869호〉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21. 11. 5 조례 제1950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